#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14 발의연월일: 2024. 9. 11.

발 의 자: 권성동・이만희・윤한홍

박상웅 • 유용원 • 엄태영

김장겸 · 송석준 · 김승수

최은석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이자, 추심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회사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하고 있음.

동 법률을 적용받게 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리, 감독, 검사를 받도록 되어있음. 그런데 개인채무자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채권금융회사등은 무역보험공사와 같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가 존재함.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본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를 해야되는 반면, 해당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원 행정청도 동 법률과 관련한 감독, 검사를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률의 준수여부 감독을 위한 감독, 검사 권한을 원 행정청에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동 법률의 준수여부와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41조의2, 제42조, 제42조의2).

또한, 동 법률은 과잉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을 통한 채권회수가 부적절한 채권은 추심하지 못하도록 추심제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양도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도 제한하고 있음.

동 법률 시행령에서는 양도제한 채권으로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을 규정할 예정인데 이는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와 추심이 모두 제한되는 결과를 가져와 채권금융회사등의 재산권 침해 가 우려됨.

이에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해서 양도 제한은 유지하되, 추심은 허용할 수 있도록 추심제한 채권 대상에서 일부를 제외하여 반복적인 양도는 방지하되,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 법률 제 호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감독·검사 등에 관한 특례)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1조(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한다.

제4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게 할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2. 제6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
- 3.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특례)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에따라 채권추심회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햀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법률 제20054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자는 다음 각 호의 개인금융 채권을 추심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 호까지에 따른 개인금융채 권.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가 같 은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2회 이상 요청한 경우는 제 외한다.

2. ~ 4. (생략) <신 설>

개 정 안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추심의 제한) 채권추심 제14조(추심의 제한) ------1.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

> 2. ~ 4.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감독·검사 등에 관 한 특례)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 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 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제41조(같은 조 제8 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소관

제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 저 치 등) ① ~ ⑤ (생 략)

- ⑥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임원이별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하게 할수 있다.
- 1. ~ 5. (생략)
- ⑦ 금융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 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 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금융회 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 채권매입추심업자에게 다음

	행정기관의 장"(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관계법령 또는 규정	에
	따라 채권추심회사등을 관	장
	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	
	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으	로
	한다.	
H	 ]42조(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
	치 등) ① ~ ⑤ (현행과	같
	<u> </u>	
	6	
	다음 각 호의	조
	지를 할 수 있다 <u>.</u>	
	· · /// ·	
	1. ~ 5. (생 략)	
	(7)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 여금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 구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⑧ ~ ⑩ (생 략)

<신 설>

<u><신 설></u>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할 수 있다.

- 1. ~ 5. (생략)
- ⑧ ~ ⑩ 현행과 같음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을 하게 할 수 있다.
- 1.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 른 주의 또는 경고 조치
- 2. 제6항제4호 또는 제5호의조치
- 3. 제7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제42조의2(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특례) 채권추심회사등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42조(같은 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제외한다)를 적용함에 있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

원장"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 계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채 권추심회사등을 관장하는 중 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을 말한다)으로 한다.